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26.

김현정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 2025. 9.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0차 정무위원회 (2025. 11.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9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6. 9. 1.)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1차 정무위원회 (2026. 9. 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현정의원)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법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됨.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신고는 신고주체가 공직자등인 경우로서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이행으로서의 신고와 신고주체가 ‘누구든지’인 경우의 신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의 신고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부를 통해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었던 송부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법률

로 상향하여 입법한 바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규범력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송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류 승 우)

□ 현행법 제14조¹⁾는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조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송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첩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²⁾에 송부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³⁾에서 규정하고 있음.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현행 법령의 해석상 ‘송부’제도는 “법 위반행위의 다양성, 신고자 개인의 증거수집능력 한계, 위원회의 조사 권한 부존재 등으로 인해 ‘이첩’할 정도의 명백한 조사·수사 필요성을 찾아내기는 어려우나, 종결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중간영역의 사건의 경우에도 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건의 ‘송부’ 관련 사항을 신고사건의 이첩과 같이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송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에게 조사결과 통지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송부’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의안번호 제2121556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7

- 조사기관은 법률에 따라 이첩받은 신고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 송부받은 신고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조사 등을 마쳐야 하며, 수사기관 통보 등 유사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됨.
-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에 이첩 및 송부한 신고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함께 명시함으로써 신고 처리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6) 등의 경우 신고사건의 송부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⁷⁾
- 또한, 개정안은 송부 신고사건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절차를 이첩과 함께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의 신고의 경우 송부 제도가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8132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8715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현재 이첩의 경우 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 신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송부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절차가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에 이첩 및 송부한 신고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함께 명시함으로써 신고 처리의 일관성 및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현행법 제14조는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권익위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신고 사건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를 통해 명예훼손 등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며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⁸⁾과 「공직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9) 등의 경우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을 소속기관장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과태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고 있음.

□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행정벌)의 일종으로, 행정벌 중에서도 행정질서벌이자 금전벌에 해당함.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개별법에서 규정을 두었으나,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2007.12.21. 제정, 2008.6.22. 시행)으로 과태료 처분 절차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⁰⁾¹¹⁾.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0)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p.804~805

1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과태료 재판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였으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일부 법¹²⁾에서 과태료 부과 자체가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할 전형적인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닌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직접 부과하는 과태료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임.¹³⁾
- 이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 법조문, 위반행위 내용, 첨부서류(증거물, 증거물, 소속기관장 의견 등)를 포함한 위반 내역서를 관할법원에 통보¹⁴⁾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¹⁵⁾하고 있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정무위원회 위원회안('15.1.12. 의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공직자 윤리법」 제30조(과태료) 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3) 박종준, 「행정질서벌의 체계에 관한 소고」, 공법연구 제46권 제3호, 2018., p.115

14) 국민권익위원회, 「2025 청탁금지법 매뉴얼」, pp.175~177

15)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시, 과태료 부과 및 조사는 모든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기존의 감사기구 및 수사기관과 업무적 마찰이 예상된다는 의견 등에 따라 현행과 같이 수정 의결된 바 있음.

<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방식 관련 논의 경과 >

구 분	관 련 조 문	변 동 사 유
입법 예고안 (’12.8.)	제34조(과태료 부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공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u> 부과한다.	-
정부안 (’13.8.)	제32조(과태료 부과) ⑦ <u>소속기관장은</u>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u>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u> <u>통보</u> 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의 불분명(소속, 감독, 감사원, 수사기관)으로 실무상 관할 중복 또는 충돌 우려 ▪ 각 기관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소명정도, 액수 등) 형평성 문제 제기 우려
정무위안 (’15.1.12.)	제23조(과태료 부과) ⑦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국민권익위원회가</u> 부과·징수한다.	▪ 법원의 과태료 판단기준이 엄격하고 시일이 오래 소요됨을 감안하여 제재의 실효성 확보 필요
법사위 수정안 (’15.3.3., 현행)	제23조(과태료 부과) ⑦ <u>소속기관장은</u>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u>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u> <u>통보</u> 하여야 한다.	▪ 권익위의 과태료 부과 및 조사는 모든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가능하여 전통적인 감사 및 수사 절차와 마찰을 일으킬 우려

□ 그런데, 소관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소관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약 17,8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실태 점검한 결과, 현행법 제정 이래 과태료 부과 대상 미통보건은 55건에 달함.¹⁶⁾

<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미통보 건수 >

구분	2022.5~	2023	2024	합계
건수	19	23	13	5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 하려는 것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동일 위반행위임에도 소속기관장의 통보 여부나 관할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과 ‘신고자 보호·보상 조치 위반’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2025년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처리 현황은 2026년 점검 예정

＜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

유형	위반행위	과태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제8조제2항 ¹⁷⁾ 위반 공직자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 ¹⁸⁾ 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제8조제5항 ¹⁹⁾ 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이상 5배 이하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위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3천만원 이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을 신고 및 반환 조치 하지 아니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 먼저,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위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²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17)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8)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
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9)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위의 두 법률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권익위의 요구·결정(자료제출 요구, 특별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거부나 불이행 등에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을 가진 권익위가 직접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위 두 법률과 같이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권익위로 일원화하는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15조제4항은 신고자 보호·보상 사건의 조사, 자료 제출·출석, 의견 진술, 특별보호조치결정 이행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면서, 제23조제7항은 보호·보상 관련 과태료(법 제23조제1항제2호)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규정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음.²¹⁾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21)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고자 보호 관련 과태료 규정 비교 >

구분	부패방지 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재정 환수법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 제출 거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 부과 주체	위원회	위원회	법원	법원	위원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다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가 접수하여 이첩한 신고의 경우에만 그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도록 하고 있을 뿐²²⁾이므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동법 제22조²³⁾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를 위해 당사자 등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소관 업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권익위의 과태료 부과 및 조사는 모든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은 제14조

22)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조사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의 분리에 따른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기관 간 협조 등 규정을 정비하여야 함.

-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통보 의무 부여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였던 정무위원회 위원회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 규정 관련 정무위안 및 법사위 수정안 비교 >

구 분	정무위안	법사위 수정안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청탁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과태료 부과 등	5호 삭제
제14조(신고의 처리)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정 무 위 안	법 사 위 수 정 안
제23조(과태료 부과)	⑦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u>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종합하면,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권익위는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운영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권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조사·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형평성 있고 신속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동의하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어 기관 간 자료제출 협조, 조직·인력 보강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서일준위원)

- 수정하여 의결함.

6. 수정안의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3일 정무위원장

나.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의 처리 유형인 송부와 종결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서 개별 조문으로 독립하여 규정하고,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도 이 첩과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법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전환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이를 추가함(안 제13조의 3 신설 등).

7. 찬반토론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안 제13조의3은 신고의 처리 유형인 송부와 종결에 관한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고, 안 제14조는 그에 따라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의 사건처리 절차, 신고자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통보, 신고자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시행령 제14조제1항²⁴⁾에 따르면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는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나, 개정안 제13조의3제2항 단서는 신고 종결처리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신고가 안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 시행령과 같이 조사기관도 접수 또는 이첩·송부된 신고를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제1항 단서에 조사기관의 종결처리 권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밖에 안 제13조의3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14조는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내용인 점을 고려하여 안 제13조의3 및 제14조의 제목을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로 수정하였고,

안 제13조의3제2항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조사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약칭의 실익이 적을 뿐 아니라, 제14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감사 또는 수사”라고 명시된 점을 고려하여 약칭을 삭제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조사·감사 또는 수사”로 통일하는 등 경미한 자

-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구를 수정하였음(주서본 참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사건의 처리 유형인 송부와 종결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서 개별 조문으로 독립하여 규정하고,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도 이첩과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법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전환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이를 추가함(안 제13조의3 신설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7항”으로 한다.

안 제9조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고자 등의 보호 등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

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2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이첩·송부·종결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처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를 “조사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제2항”을 “제1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이첩받은”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안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조제8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7조제7항”으로 한다

안 제23조제7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를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14조제3항”을 “제13조의3제4항”으로, “제13조제1항”을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 ⑥ (생략) <u><신설></u>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한 공직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u>⑦</u> (생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u>⑦</u> (개정안 제8항과 같음)
<u>⑧</u>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u>⑨</u> ----- <u>제8항</u> ----- ----- ----- ----- -----	<u>⑧</u> ----- <u>제7항</u>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⑥ (생략) <u><신 설></u>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 --.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국민권익위원회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한 공직자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8항----- ----- ----- -----	----- -.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⑦ (개정안 제8항과 같음) ⑧ -----제7항----- ----- ----- -----
---	---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 -----.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현행과 같음)	----- -----.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신고자 등의 보호 등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u> 제13조의3(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u>국민권익위원회는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u>
--	--	--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
는 접수된 신고사
항에 대하여 감사
· 수사 또는 조사
(이하 “조사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경
우 이를 제13조제1
항제1호 또는 제2
호의 기관(이하 “조
사기관”이라 한다)
에 이첩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
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

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
나 증명자료 등
에 대한 보완 요
청을 2회 이상
받고도 국민권익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
에 보완하지 아
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
리 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
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다시 신
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
에 새로운 증거
가 없는 경우

6.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
고에 관하여 조
사등 중에 있거
나 이미 끝난 경
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
우

7.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인정되는 경
우

③ 국민권익위원회
는 접수된 신고사
항이 제2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
리의 대상인지 명
백하지 아니한 경
우로서 조사기관에
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이첩·송부·종결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처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에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조사기관은 제1
항에 따라 조사·감
사 또는 수사를 마
친 날부터 10일 이
내에 그 결과를 신
고자와 국민권익위
원회에 통보(국민권

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
는 신고자를 상대
로 제2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이
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
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
정하여 피신고자에
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삭 제>

② -----

익위원회로부터 이
첩 받은 경우만 해
당한다)하고,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
과에 따라 공소 제
기, 과태료 부과 대
상 위반행위의 통
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
사 결과를 통보받
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
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⑤

제 4 항

⑥ 제4항 또는 제5항

이첩 또는 송부^ㅁ받

은-----

③ _____
 ---제2항---

④ 제2항 또는 제3항-----

[illegible]

⑤ (개정안 제7항과
같음)

⑧ 제7항

⑥ 제5항-----

제18조(비밀누설 금지) -----

제18조(비밀누설 금지) -----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
은 그 업무처리 과정
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제7조제7항
에 따라 공개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2. (생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⑥ (생략)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
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
법」에 따른 과태
료 재판 관할법원
에 통보하여야 한
다.

<신설>

-----제7조제8항-----

1.2.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과태료 부과에 필
요한 사항을 국민
권익위원회에 알려
야-----.

⑧ 제1항부터 제5

-----제7조제7항-----

1.2. (개정안과 같
음)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
제1항제1호, 제2항
제1호 및 제3항부
터 제5항까지의 과
태료 부과 대상자
에 대해서는 그 위
반 사실을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
른 과태료 재판 관
할법원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⑧ 제1항제2호 및

	<u>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u> 부칙 <u>제2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u>	<u>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u> 부칙 <u>제2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4항-----</u> ----- -----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 ----- -----.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고자 등의 보호 등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감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가 제2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이첩·송부·종결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 및 피신고자(제4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처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신고의 이첩·종결·송부 및 피신고자의 의견·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제목 중 “신고의”를 “조사기관의 신고”라고 하고,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를 “조사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제2항”을 “제13조의3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으로, “이첩받은”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이첩받은”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관은 신고가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23조제7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

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신고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 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 무를 관장한다. 1. ~ 5.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신고자 등의 보호 등 위반행 위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 수</u> 제13조의3(국민권익위원회의 신 고 처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u>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 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내용의 진위여부 확 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에게 자료의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u>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u>신고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 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u>

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
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감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가 제2항에 따른 이첩 또
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
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
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이첩·송부·종결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 및 피신고자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4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처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내용의 확인, 신고의 이첩·종결·송부 및 피신고자의 의견·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사기관의 신고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라-----제13조의3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이
첩 또는 송부받은-----
-----.

다만, 조사기관은 신고가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삭 제>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② -----제1항 본문-----

-----이첩 또는 송부받은-----

③ -----제2항-----

④ 제2항 또는 제3항-----

-----제3항-----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
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
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
를 알려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⑥
(생략)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
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
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
여야 한다.

<신설>

-----.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⑥ 제5항-----

-----.

-----.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
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
여야 한다.

⑧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권익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